

인천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582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5828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19가소7884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민경식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홍순용

변론종결 2022. 4. 28.

판결선고 2022. 5. 19.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19가소7884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1 예비적 청구로 병합 형태를 변경하는 한편 아래에서 보는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캐피탈중개업, 금융서비스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나.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19. 4. 말경 동생 C를 통하여 중고차 매매업자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의뢰하고,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차량과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 다. E은 2019. 5. 초경 D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면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9. 5. 9. 대출금 중 24,600,000원을 E과 D가 지정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 라. D는 그 무렵 C에게 위 24,600,000원이 매매대금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이후 D는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9. 5. 13. F 명의로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마. D는 2020. 11. 19.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과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9. 4. 26.경 C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고, 2019. 5. 9.경 E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는 등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다수의 사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272, 2019고단5248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24,6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전등록이나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 위 금원 지급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6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24,600,000원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중 상당 금액을 D에게 임의로 처분한 데 이어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이는 피고가 D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 또는 횡령한 것이거나 D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6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무자력자인 E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24,6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서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E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E과 D가 지정한 피고의 계좌로 대출금 중 24,600,000원을 입금하였다. 위 대출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E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다(원고는 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후 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입금한 것은 원고의 E에 대한 급부와 E의 피고에 대한 급부가 아울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참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230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는 C를 통하여 D에게 차량 판매를 위탁하면서 이 사건 차량과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그 금원 대부분을 돌려주었다. D는 C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E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다수의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가 D의 사기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D가 벌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면서 그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금융서비스중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출 과정에서 주의를 더 기울였다면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원고는 피고와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2. 28. '피의자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고소가 각하되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에게 다소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D의 사기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가 D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의 행사 여부는 그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금전채권인 대출금채권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E이 무자력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 외에 원고가 E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원고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E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고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E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E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원용일, 판사 박정운, 판사 권성우